「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」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고단위 플러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, 거치식예금 약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.

제4조 운용지시

이 예금의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고객은 "퇴직연금 신규가입금액 또는 운용지시일 전일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액"(이하 "기준금액"이라 함)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다.

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의 경우 기준금액 5억원 이상
- 2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경우 기준금액 3억원 이상
- 3. 개인형 퇴직연금(개인형 IRP)의 경우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

제5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, 1년 이상 3년 이하 연단위로 한다.

제6조 판매한도

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(2,000억원)으로 한다.

제7조 재예치

- 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한다.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, 재예치 이자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.
-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, 고객이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,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한다.
- ③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한다. 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이자율을 재예치일의 이자율로하여 적용하고,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한다.

제8조 이자적용

- ① 예금의 이자는 예금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-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-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 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
•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이자율

특별중도해지 사유	중도해지이자율
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[□]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 □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□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□ 수탁자의 사임 □ 하나은행 내 계약이전 □ 하나은행 내 가입자 제도 전환 □ 수수료 납부 □ 가입자의 사망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	신규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에 대해 '신규 또 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자율'
□ 다른 상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 는 정기예금을 매도하는 교체매매	신규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에 대해 '신규 또 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자율 — 0.8%'

- 1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- ④ 예금의 만기 시 재예치되는 경우 만기 후 이자율의 적용은 불가하다.

제9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한다.

제10조 분할해지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분할해지시의 적용이자율은 제8조에 따른다.

제11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.

제12조 기타

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한다.

< 부칙 >

본 약관은 2012년 2월 1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한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